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보석 보증 업계의 기준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혁안 발표**

**60일 이내에 보석 보증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양심적 활동에 대해 조정을 거친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는 주지사의 약속 이행**

새로운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 [규정](#)에 따라 주무부(Department of State, DOS)와 주 차원에서 함께 진행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결과 수용, 보석 계약 승인 요구, 담보물과 보험료의 적시 반환 강제, 보고 횟수 증가키로

금융서비스부(DFS)와 주무부(DOS), 최종 규정 채택에 이어 보석 보증 소비자 “권리장전” 개시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보석 보증업의 청렴성 기준을 높이고 보증 업계의 제도 남용으로부터 취약 계층의 뉴욕 주민을 보호하고 보석 보증의 투명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 제안된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제안된 [규정](#)은 보석 보증 업계에 대한 금융서비스부(DFS)의 지속적인 조사 결과뿐 아니라, 뉴욕주무부(New York Department of State)와 함께 6월에 주 차원에서 개최한 일련의 [공청회](#)를 통해 내린 결론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와 공청회를 진행한 결과, 주로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뉴욕 주민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관행으로 가득 찬 업계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제안 규정에서는 뉴욕주의 현행 법정 권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나쁜 관행을 금지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 주민이 보석 보증 제도와 이 제도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더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금융서비스부(DFS)와 주무부(DOS)가 새로운 보석 보증 “권리장전”을 법률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보석 보증 업계의 약탈적 관행을 타파하고 비양심적인 활동으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고, 모든 이가 각자의 경제 사정에 상관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매우

긴요합니다. 우리는 뉴욕이 앞으로도 미국에서 평등과 정의를 상징하는 곳으로 남을 수 있도록 시대에 뒤진 보석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새로운 금융서비스부(DFS)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석 대리인이 법령에 정해진 보험료와 법원에서 부과하는 특별 보석 조건부 비용 이외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
- 모든 보석 보증 계약서와 양식을 감독관이 사전 승인해야 하고 미승인 양식의 사용을 금지함
- 해당될 경우 담보물과 보험료의 적시 반환을 강제함
- 보석 대리인은 소비자에게 영수증은 물론이고 보석 서비스 거래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와 서류 사본을 제공해야 함
- 보석 대리인이 법원 측에 피고인에 대한 대리인 역할 사퇴 의사를 밝히고 보증의 취소를 구할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기술하여 법정과 보석 보증 보험 구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함
- 보증회사가 보석 대리인을 더욱 면밀히 감독할 것을 주문함
- 보석 대리인이 본인의 면허증과 “소장 작성 방법”이라는 안내 표지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할 것을 요구함
- 보석 대리인이 소비자의 권리와 보석 대리인의 책임을 개괄한 안내문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함
- 기록 보관 및 보고 횟수와 기간을 늘리고 개선할 것을 요구함

뉴욕주의 구식 보석금 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주지사의 포괄적 형사 사법 어젠다와 경범죄 및 비폭력 중범죄 보석금 제도 폐지를 포함하여 보석금 제도 개혁을 입법화하려는 뉴욕주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 5월 주지사의 발표 이후, 보석 보증 회사와 대리인에 대한 면허 발급, 감독 및 집행 권한을 가진 금융서비스부(DFS)와 소비자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Department of State)의 소비자보호국(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 DCP)은 뉴욕시, 웨스턴 뉴욕, 센트럴 뉴욕에서 일련의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금융서비스부(DFS)는 보석 보증 업계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해, 뉴욕에서 사업 면허를 가진 모든 보증 회사와 보석 대리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금융서비스부(DFS)에서는 모든 관계자와 당사자에게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신자 요금 부담 전화인 (800) 342-3736 또는 [BailBond2018@dfs.ny.gov](mailto:BailBond2018@dfs.ny.gov)로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어긴 것으로 밝혀지는 보석 대리인은 벌금뿐 아니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FS)의 조사와 공동으로 진행한 일련의 공청회 결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많은 대리인이 뜻하지 않게 수감된 가족과 친구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뉴욕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밝혀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보석 대리인이 청구하는 각종 수수료와 비용, 담보물

반환과 아울러, 투명성, 소비자 권익, 보석 대리인의 책임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을 청취했습니다.

새로 제안된 규정은 2017년 뉴욕 상소법원에서 *Gevorkyan 대 Judelson* 사건에 대해 뉴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는 위험을 추종한다는 점을 확인하여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판결에 관해 금융서비스부(DFS)가 작년에 발행한 지침을 따릅니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를 면하지 못할 때는 보석 보증회사나 보석 대리인에게 아무런 위험이 없으므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제안된 규정 외에도, 금융서비스부(DFS)와 소비자보호국(DCP)에서는 보석 대리인과 계약할 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권리장전”을 비롯한 소비자 교육 자료를 공동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두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보호국(DCP)은 공식 발표를 통해 보석 보증 업계와 관련된 우려 사항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악용에 맞서 싸우고 보석 보증 제도에 대한 개인의 이해도 제고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석 보증업에 대한 이러한 개선 조치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고 업계의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주지사님과 나는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금융서비스부(Financial Services)의 Maria T. Vullo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FS)는 새로 제안된 이 규정을 공포하여 보석 업계의 제도 남용으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겠다는 주지사의 계획을 든든히 뒷받침한다는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보석 대리인이 종종 가장 취약한 계층의 뉴욕 주민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금융서비스부는 모든 뉴욕 주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 개혁, 적절한 행정 조치, 기타 각종 목표에 따른 대책 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뉴욕주의 대응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Rossana Rosado 뉴욕주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석 보증 대리인의 서비스를 받을 필요성이 생길 때 이런 일이 생기리라 예상하고 미리 계획한 뉴욕 주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경비 지출, 시급성 그리고 이런 사태의 원인이 된 형사고발이 미칠 잠재적 영향에 압도되어 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국(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에서는 뉴욕 주민을 상대로 하여 보석 대리인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신의 권리와 활용 가능한 모든 구제 수단을 교육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주 행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보석 대리인에 대한 뉴욕주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 및 기타 변경할 사항을 모색하고, 법원에서 직접 발부하는 무담보 및

부분 담보 보증서와 같이 보석금 대체 수단의 이용을 장려하여 현금이나 상업용 보석 보증이 필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안 규정은 뉴욕주 등록부에 공고 후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됩니다. 규정안의 사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